



의안번호	제 2023 - 18호
보 고 연 월 일	2023. 8. 8. (제126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 I. 제155차 전체회의 1
 - 1. 일시·장소 1
 - 2. 참석자 1
 - 3. 주요 안건 1

- II.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2
 - 1. 개관 2
 - 2. 설정 범위 2
 - 3. 유형 분류 18
 - 4. 전문위원단 다수의견 요약 33

- III. 향후 일정 37

【별첨】

최형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강선주, 김한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I. 제155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2023. 7. 17.(월) 16:00 ~ 17:30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9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용민, 김한울, 김현아, 박성훈, 이민우, 최익구, 최형준,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

II.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1. 개관

가. 연혁

- 2012. 6. 18. 설정, 2012. 7. 1. 시행
- 2017. 4. 10. 수정, 2017. 5. 15. 시행 → 영업비밀침해행위(대유형 3) 형량범위 상향
- 그 후 수정은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 등 양형기준 전반에 걸친 정비(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나. 구성요건 신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침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전략기술 유출·침해 등

다. 법정형 상향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항(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법정형 상향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舊 제36조 제2항) 법정형 상향

2. 설정 범위

가. 기존 설정 대상 범죄(유지) ⇨ 견해 일치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설정되어 있음
- 기존 설정 범죄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 없고, 법정형 변경 등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신규 설정 대상 범죄

(1)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침해(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 견해 일치(포함)

- 2019. 8. 20. 개정으로 신설(2020. 2. 21. 시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1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으로 법정형 중합
-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규정을 둔 입법취지 존중
- 선고사례가 아직 1건에 불과하나,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반영 필요

(2)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 견해 일치(포함)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국외유출 등에 관하여 법정형을 강화함
-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2022. 2. 3. 제정, 2022. 8. 4. 시행), 양형 사례 없음
-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성요건이 유사함
- 설정 범위에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침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와 유사한 구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도 규범적 설정 가능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6조 제1항 (3↑)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득 등	제50조 제1항 (5↑)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
제36조 제2항 (15↓)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 제2항 (20↓)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수출 등	승인을 받아 수출 등
제36조 제3항 (10 ↓)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득 등	제50조 제3항 (15 ↓) 전략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

- 2042.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에 해당하지만, 약 20년이 남아 있고, 상시법 전환 가능성도 있어 양형기준 설정에 지장을 주지는 않음

(3) 방위산업기술 국외·국내 침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누설·도용(같은 조 제4항) ⇨ 견해 일치(포함)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사건은 양형 사례 없음
-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성요건도 유사함 ⇨ 규범적 설정 가능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국외침해	§ 21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 ¹⁾ 제1호 및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0년 ↓ / 20억 원 ↓
국내침해	§ 21 ②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10년 ↓ / 10억 원 ↓
누설·도용	§ 21 ④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7년 ↓ / 7천만 원 ↓

(4)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2, 제3의5, 제3의

1)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6, 제3의7) ⇨ 견해 일치(포함)

- 현재 양형기준 [유형의 정의]에 따르면, 대유형2의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에 관하여는 다음 표 음영 처리 부분만 설정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저작인격권 침해	§ 136 ② 1호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	3년 ↓ / 3천만 원 ↓ (병과 가능)
부정 등록 행위	§ 136 ② 2호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함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	§ 136 ② 3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93조)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	
제공받은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36 ② 3의2호	제103조의3 제4항[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등의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권리주장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위반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행위	§ 136 ② 3의3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위반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 136 ② 3의4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 제1항(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등의 금지) 위반(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 행위	§ 136 ② 3의5호	제104조의4 제1호 또는 제2호[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부호화)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 등을 제조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	
라벨 위조 등	§ 136 ② 3의6	제104조의5(저작물 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의 행위	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 등 금지) 위반	
방송전 신호의 송신 행위	§ 136 ② 3의7호	제104조의7(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 금지) 위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	§ 136 ② 4호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등)	

- 2012년 설정 당시 논의2)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이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범죄들이지만 저작권 침해의 본류에 포함시키기는 어색한 행위유형으로서 설정대상에 포함하되 별도의 유형분류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음영 부분만 제외하게 된 경위에 관한 논의는 찾기 어려움
- 제외된 구성요건은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침해자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제3의2호), ②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복호화 하는 데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를 제조하거나(제3의5호), ③ 저작권침해복제물에 부착하기 위해 라벨을 위조하거나(제3의6호), ④ 방송전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제3의7호)하는 것임
 -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제도 도입’(제103조의3 신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행위 금지’(제104조의4부터 제104조의7 신설) 등이 규정되면서 2011. 12. 2. 신설된 조문임
- 위 음영 부분과 그 이외 부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음영 부분도 설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2) 2012. 4. 30.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전문위원 전체회의 자료)

(5)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카목 4)] ⇨ 견해 일치(포함)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부정경쟁행위가 대유형4로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음영)
- 개정을 통해 기존과 달라진 부분: ‘자목(형태 모방 행위), 카목 4(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목적 기술·서비스·장치 제공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 → 기존에 처벌 대상이었던 부정경쟁행위와 가벌성에 크게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포함하는 것이 타당

적용 법조	개정 전	개정 법률(2021. 12. 7. 개정, 2022. 4. 20. 시행)	
	구성요건	구성요건	법정형
§ 18 ③ 1 호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 제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카목 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 2 1호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년 ↓ / 3천만 원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³⁾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p>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p> <p>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p> <p>(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p> <p>(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p> <p>(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p> <p>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p> <p>(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p> <p>(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p> <p>(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p> <p>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p> <p>(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p>	
<p><신설></p>		<p>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p>

		<p>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u>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p>	
		<p>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p>	

3)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된 이외에는 동일하고, 다.목도 이와 같음

다. 설정 제외 범죄

(1) 산업기술 중과실 유출·침해, 목적 외 용도 정보사용·공개(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4항) ⇨ 견해 일치(제외)

개정 전			개정법률(2019. 8. 20. 개정, 2020. 2. 21. 시행)		
적용 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적용 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36 ③	제14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3년 ↓/ 3억 원 ↓	§ 36 ④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년 ↓/ 3억 원 ↓
<p>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p> <p>4. 제1호(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득 행위 등) 또는 제2호(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2019. 8. 20. 신설)</p>					

- 연혁: 2012년 설정 당시 포함 여부 논의되었으나, 과실범을 포함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에서 제외됨
-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 다른 행위(제4호, 제8호 이외) 처벌 규정인 제36조 제3항(舊 제36조 제2항)은 2019. 8. 20.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되었으나, 본 조문은 법정형이 그대로 유지 ⇨ 입법자도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높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됨
- 본 구성요건을 새로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다른 구성요건에 비해 법정형이 낮은 점에 비추어 별도의 소유형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형량범위가 낮은 유형이 신설됨으로 인해 전체

적인 형량범위표의 인상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음

- 선고 사례가 없어 양형기준 설정 실익 적음

(2) 전략기술 중과실 취득·사용·공개, 목적 외 용도 정보사용·공개 등(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4항) ⇨ 견해 일치(제외)

- 위 각 조항은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4항과 구조 유사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6조 제4항 (3↓) 산업기술 중과실 취득·사용·공개, 목적 외 용도 정보 사용·공개 등	제50조 제4항 (5↓) 전략기술 중과실 취득·사용·공개, 목적 외 용도 정보 사용·공개 등

- 과실범 포함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유형 신설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선고 사례도 없음

(3) 허위표시행위(특허법 제228조, 실용신안법 제48조, 디자인보호법 제222조, 상표법 제233조) ⇨ 견해 일치(제외)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허위표시죄	특허법 § 228	제224조(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위반	3년 ↓ / 3천만 원 ↓
허위표시죄	실용신안법 § 4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실용신안된 것이 아닌 물건에 실용신안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위반	3년 ↓ / 3천만 원 ↓
허위표시죄	디자인보호법 § 222	제215조(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에 디자인등록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위반	3년 ↓ / 3천만 원 ↓
거짓표시죄	상표법 § 233	제224조(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등) 위반	3년 ↓ / 3천만 원 ↓

- 연혁: 2012년 설정 당시 포함 여부 논의되었으나, 선고사례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제외함

-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음(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 침해범죄와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음
- 침해범죄(7년 ↓ / 1억 원 ↓)에 비해 법정형이 낮고, 국민적 관심도 높지 않음
- 선고사례 거의 없음(판결문 검색 결과, 특허 19건, 상표 2건)

(4) 부정등록행위(특허법 제229조, 실용신안법 제49조, 디자인보호법 제223조, 상표법 제234조) ⇨ 견해 일치(제외)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거짓행위죄	특허법 § 22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음	3년 ↓ / 3천만 원 ↓
거짓행위죄	실용신안법 § 4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음	3년 ↓ / 3천만 원 ↓
거짓행위죄	디자인보호법 § 22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음	3년 ↓ / 3천만 원 ↓
거짓행위죄	상표법 § 23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음	3년 ↓ / 3천만 원 ↓

- 연혁: 2012년 설정 당시 포함 여부 논의되었고, 등록권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선고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제외하였으나, 저작권법은 제136조 제2항의 처벌규정에 저작권 관련 침해행위가 한꺼번에 모아져 있어 이를 함께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정등록행위도 포함됨(양형기준에서 저작

권법만 2-2유형에 포함되어 있음)

- 실무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 무효심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피하고, 등록과정에서의 거짓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경우가 드물
- 침해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고, 국민적 관심도 높지 않음
- 선고사례 거의 없음(판결문 검색 결과, 특허 2건, 상표 1건)

(5) 비밀누설 등(특허법 제226조, 실용신안법 제46조, 디자인보호법 제22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 견해 일치(제외)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비밀누설죄	특허법 § 226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 포함)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또는 도용	5년 ↓ / 5천만 원 ↓
	특허법 § 226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 누설	(징역 또는 금고) 2년 ↓ / 1천만 원 ↓
비밀누설죄	실용신안법 § 46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 포함)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5년 ↓ / 5천만 원 ↓
비밀누설죄	디자인보호법 § 225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5년 ↓ / 5천만 원 ↓
	디자인보호법 § 225 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5년 ↓ / 5천만 원 ↓
	디자인보호법 § 225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	2년 ↓ /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	2천만 원 ↓
	디자인보호법 § 225 ④	제185조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	2년 ↓ / 2천만 원 ↓
비밀누설죄 등	부정경쟁방지법 § 18 ④ 1호	제9조의7 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1년 ↓ / 1천만 원 ↓
	부정경쟁방지법 § 18 ④ 2호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 연혁: 2012년 설정 당시 포함 여부 논의되었고, 선고사례가 없어 원칙적으로는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이 주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5항은 행위주체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발생 가능성 높다는 점 고려하여 설정대상에 포함(양형기준에서 산업기술보호법만 3-1유형에 포함되어 있음)
- 국민적 관심도 높지 않고, 선고사례 없어 설정 실익 크지 않음

(6) 비밀유지명령위반(특허법 제229조의2 제1항,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224조 제1항, 상표법 제231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4 제1항,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의2 제1항) ⇨ 견해 일치(제외)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	------	-----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비밀유지명령위반죄	특허법 § 229의2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	5년 ↓ / 5천만 원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실용신안법 § 49의2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	5년 ↓ / 5천만 원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디자인보호법 § 224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7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	5년 ↓ / 5천만 원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상표법 § 231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	5년 ↓ / 5천만 원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저작권법 § 136 ① 2호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	5년 ↓ / 5천만 원 ↓ (병과 가능)
비밀유지명령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 18-4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	5년 ↓ / 5천만 원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산업기술보호법 § 36의2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	5년 ↓ / 5천만 원 ↓

- 법원의 비밀유지명령(특허권 등 침해 소송에서 준비서면,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함)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
- 연혁: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이 2011. 12. 2. 개정 시 도입되었고, 그 때 처벌규정도 도입되어 설정 당시에 논의되지는 않음
- 비밀유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행위 등 일반적인 지식재산권범죄와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음
- 법원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가 없어 부수처분 위반 등 다른 위반범죄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고사례도 없어 양형기준 설정 실익 크지 않음

(7)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등(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각 호) ⇨ 견해 일치(제외)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저작권법위반	§ 137 ① 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	1년 ↓ / 1천만 원 ↓
	§ 137 ① 2호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	
	§ 137 ① 3호	제14조 제2항(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 금지) 위반	
	§ 137 ① 3의2호	제104조의4 제3호(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금지) 위반	
	§ 137 ① 3의3호	제104조의6(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 등 금지) 위반	
	§ 137 ① 4호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함	
	§ 137 ① 5호	제124조 제2항(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 저작인격권 침해)	
	§ 137 ① 6호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	
	§ 137 ① 7호	제55조의5(저작권 등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금지) 위반	

- 법정형이 1년 이하로서 중하지 않고, 사회적 관심도 크지 않음
- 판결문 검색 결과, 2018~2022년 구공판 선고 사례 2건(각 상상적 경합 사건)으로 설정 실익 적음

(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견해 일치(제외)

-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등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연혁: 2012년 설정 당시 포함 여부 논의되었으나, 법률 제정(1992년) 이후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제외함
 - 판결문 검색 결과, 법률 제정 이후 선고 사례 1건 불과(이중 경합 사건)
-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 침해 범죄(제45조 제1항)의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특허 등 다른 침해죄의 법정형(7년 ↓ 또는 1억 원 ↓)에 비해 법정형 낮음
- 출원이나 심사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를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바, 특허권 등과 구조에 차이가 있음
- 실무상 대부분 기업들이 반도체배치설계를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기보다는 회사 내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있음 → 비등록권리에 관하여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규율 가능성 ↑
- 양형기준 설정 실익 크지 않음

(9) 식물신품종 보호법 ⇨ 견해 일치(제외)

-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원국이 되면서 2012년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신품종과 그 육성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2. 6. 1. 제정
-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제131조 제1항)의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특허권 등 침해와 동일
- 판결문 검색 결과, 법률 제정 이후 구공판 사건 선고 건수가 5건에 불과하고(이중 경합 사건 포함), 국민적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설정의 필요성 낮음

3. 유형 분류

가. 논의의 전제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나. 기술유출범죄군 신설 여부 ⇨ 견해 대립

(1) 제1안(7인, 신설하지 않음)

- 현행 양형기준

범죄군	유형	
지식재산권범죄	1	등록권리침해행위
	2	저작권침해행위
	3	영업비밀침해행위
	4	부정경쟁행위

- 기술유출범죄군에 포함될 사건 수(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가 너무 적어 별도 범죄군으로 신설할 실익 없음
 - 하나의 범죄군 내에서 양형사례가 어느 정도 축적되는 것이 양형자료조사 등 양형기준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적절할 것인데, 위 각 유형 중 일부만으로는 사례가 많지 않아 별도로 분리해내기 적절치 않음
 - 2020~2022년 선고 사건 중 영업비밀침해행위(대유형3) 양형기준이 적용된 단일범(동종경합 포함) 사건은 51건(아래 통계)
- 4개의 유형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틀에 포섭되고, 적용되는 지식재산 관련 법리도 서로 겹침
 -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침해범죄도 특허권침해와 침해 여부의 판단구조가 유사하여 동일한 지식재산법리가 적용되거나 혹은 준용됨
-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 틀 내에서 정리하

여 제시함으로써 적용의 편이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이 2012. 7. 1.부터 이미 10년 이상 시행되어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의 경우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으로 인식되어 있음. 새로운 범죄군을 신설할 경우 해당 범죄군을 찾는 데 혼선을 야기할 우려 있음
- 영업비밀은 기술보다 범위가 넓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범죄가 2개의 범죄군으로 흩어지는 것도 적절치 않음
- 아동학대범죄 역시 별도의 범죄군이 아닌 대유형으로만 설정하였음

(2) 제2안(3인, 기술유출범죄군 신설)

범죄군	유형	
기술유출범죄 (신설)	1	영업비밀침해행위
	2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신설)
지식재산권범죄	1	등록권리침해행위
	2	저작권침해행위
	3	부정경쟁행위

-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술유출범죄군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양형기준 상향 및 기술유출범죄 엄단에 관해 양형위원회의 명시적인 의지를 표명할 수 있음
- 기술유출사건은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 약화,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이로 인해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그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이 절실함
- 해외 각국에서는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이고, 우리나라도 산업계 등에서 기술유출범죄에 엄정한 대처를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나, 실제 처벌되는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영업비밀침해행위는 범죄 특성상 대부분 초범이고, 피해규모의 입증에 어려운데, 다른 지식재산권 범죄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집행유예 기준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율이 75% 수준으로 ('17~'19) 매우 높은 상황 → 별도 범죄군 신설 필요(적어도 별도 집행유예 기준 신설 필요)
-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지식재산권 범죄에서 분리하고,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여, 이를 독립된 기술유출범죄군으로 설정하자는 안

다. 대유형 및 소유형의 분류

(1) 등록권리침해행위(대유형1) ⇨ 견해 일치(현행 유지)

(가) 현행 양형기준

01 ¹ 등록권리침해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침해행위			

(나) 통계4)

유형	형량(월)										
	2	3	4	5	6	7	8	10	12		
등록권리침해행위	수	0	1	11	0	52	0	27	53	50	
	비율	0.0	0.4	4.9	0.0	23.3	0.0	12.1	23.8	22.4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14	15	16	18	20	24	36				
등록권리침해행위	수	2	1	3	15	1	6	1	223	10.16	
	비율	0.9	0.4	1.3	6.7	0.4	2.7	0.4	100.0		

(다) 법정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	-----

4) 2020년 ~ 2022년 선고된 사건 중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에 대한 단일범(동종경합 포함) 제1심 사건 통계임.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이하 같음)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7년↓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라) 검토: 현행 유지

- 법정형이 동일하고, 통계상 유형 분류를 변경할 필요성은 찾기 어려움

(2) 저작권침해행위(대유형2) ⇨ 견해 일치(현행 유지)

(가) 현행 양형기준

02 ¹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침해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나) 통계

유형		형량(월)									
		2	3	4	5	6	7	8	10	12	
저작권침해행위	제1유형	수	0	1	4	0	21	0	13	6	5
		비율	0.0	1.8	7.0	0.0	36.8	0.0	22.8	10.5	8.8
	제2유형	수	0	0	2	0	1	0	1	2	0
		비율	0.0	0.0	28.6	0.0	14.3	0.0	14.3	28.6	0.0
	전체	수	0	1	6	0	22	0	14	8	5
		비율	0.0	1.6	9.4	0.0	34.4	0.0	21.9	12.5	7.8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14	15	16	18	20	24	36			
저작권침해행위	제1유형	수	1	0	0	3	0	2	1	57	9.14
		비율	1.8	0.0	0.0	5.3	0.0	3.5	1.8	100.0	
	제2유형	수	0	0	0	0	0	1	0	7	9.43
		비율	0.0	0.0	0.0	0.0	0.0	14.3	0.0	100.0	
	전체	수	1	0	0	3	0	3	1	64	9.17
		비율	1.6	0.0	0.0	4.7	0.0	4.7	1.6	100.0	

(다) 법정형

유형	적용법조	구성요건(신규 설정범죄 포함)	법정형
1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권리 제외) 등 침해행위	5↓
2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1.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2. 부정등록행위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제93조) 침해행위 3의2. 복제·전송자의 정보 청구 목적 외 용도 사용 행위 3의3. 업 또는 영리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3의4. 업 또는 영리목적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등 3의5. 암호화된 방송 신호 복호화 목적 장치 제조 행위 등 3의6. 불법복제물에 부착하기 위한 라벨 위조 행위 등 3의7. 방송전 신호 송신행위 4.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3↓

(라) 검토: 현행 유지

- 법정형의 차이에 맞게 유형이 분류되어 있음
- 제2유형의 평균형량이 다소 높지만, 사례가 많지 않아(총 7건)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3)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 관련 대유형(대유형 3 또는 3, 4)

(가) 현행 양형기준

03 ¹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2	국외침해			

(나) 통계

유형	형량(월)										
	2	3	4	5	6	7	8	10	12		
영업비밀침해행위	제1유형	수	0	0	2	1	11	0	8	2	13
		비율	0.0	0.0	5.0	2.5	27.5	0.0	20.0	5.0	32.5
	제2유형	수	0	0	0	0	0	1	0	0	7
		비율	0.0	0.0	0.0	0.0	0.0	9.1	0.0	0.0	63.6
	전체	수	0	0	2	1	11	1	8	2	20
		비율	0.0	0.0	3.9	2.0	21.6	2.0	15.7	3.9	39.2

유형		형량(월)									
		2	3	4	5	6	7	8	10	12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14	15	16	18	20	24	36			
영업비밀침해행위	제1유형	수	0	0	0	3	0	0	0	40	9.33
		비율	0.0	0.0	0.0	7.5	0.0	0.0	0.0	100.0	
	제2유형	수	0	0	0	1	1	1	0	11	13.91
		비율	0.0	0.0	0.0	9.1	9.1	9.1	0.0	100.0	
	전체	수	0	0	0	4	1	1	0	51	10.31
		비율	0.0	0.0	0.0	7.8	2.0	2.0	0.0	100.0	

(다) 법정형

명칭	구성요건(신규 설정 범죄 포함)	적용법조	법정형
누설·도용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4항	7↓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국내침해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10↓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	10↓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2항	10↓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3항	15↓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15↓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15↓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	방산기술보호법	20↓

명칭	구성요건(신규 설정 범죄 포함)	적용법조	법정형
	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제21조 제1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략기술 수출 등/전략기술 외국 사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 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등/전략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공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2항	20↓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3↑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 유출 등/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전략기술 취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5↑

(라) 검토 ⇨ 견해 대립

① 제1안: 영업비밀침해행위(대유형3)와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4)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7인)

03¹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2	국외침해			

가. 제1유형(영업비밀 국내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10↓)

나. 제2유형(영업비밀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15↓)

04¹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설·도용			
2	국내침해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가. 제1유형(산업기술 등 누설·도용)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4항(7↓)

나. 제2유형(산업기술 등 국내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10↓)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2항(10↓)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3항(15↓)

다. 제3유형(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15↓)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1항(20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략기술 수출 등/전략기술 외국 사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등/전략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공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2항(20 ↓)

라. 제4유형(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3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 유출 등/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전략기술 취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5 ↑)

- 영업비밀침해(대유형3)와 산업기술 등 침해(대유형4)는 별도 유형으로 분리 필요
 -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정형 상향으로 징역형 법정형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결과적으로 동일해졌으나, 본래 산업기술보호법의 법정형이 높았고(현재도 일부 벌금형 법정형이 더 높음), 실무상 산업기술침해 행위를 더 중하게 취급하고 있음
- 실무에서는 산업기술침해와 영업비밀침해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 유형으로 분리함이 타당
 - 예컨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범행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하나의 유형으로 묶는 경우 양형기준 산정에 차이가 없게 됨
- 신규 설정하는 방산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모두 산업

기술보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산업기술침해와 행위태양, 보호법익이 유사하므로 산업기술 등 침해유형에 포함

○ 소유형의 분류

- 영업비밀침해행위(대유형 3)는 종전 유형 그대로 유지하여, 국내침해와 국외침해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이 있으므로 국내침해와 국외침해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
-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 4)는 국내침해와 국외침해에 따른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정형이 경미한 직무상 비밀누설·도용을 1유형으로 따로 분류하고, 법정형이 중한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을 4유형으로 따로 분류
- 방위산업기술,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더 높으나, 법정형의 정도와 규정형식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국외침해는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3유형)의 특별양형인자로, 전략기술 국외침해는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4유형)의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함이 적절

② 제2안: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3)를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3인)

03¹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산업기술 등 누설·도용			
2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국내침해			
3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가. 제1유형(산업기술 등 누설·도용)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4항(7↓)

나. 제2유형(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국내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10↓)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10↓)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2항(10↓)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3항(15↓)

다. 제3유형(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15↓)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15↓)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1항(20↓)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략기술 수출 등/전략기술 외국 사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등/전략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공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2항(20↓)

라. 제4유형(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3↑)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 유출 등/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전략기술 취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5↑)

○ 현행 대유형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지식재산권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新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으로 구분되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있음
- 현행 양형기준은 지식재산권범죄 중 침해행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분류에 따라 대유형을 분류하여 공통된 양형인자를 추출함

○ 영업비밀, 산업기술을 같은 유형(3유형)으로 묶음

-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하는데, 위 요건의 입증에 실무적으로 쉽지 않음 →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면 입증이 용이해짐
- 영업비밀침해와 산업기술침해는 행위태양이 유사하고, 징역형 법정형도 동일함(국외침해: 15년 이하, 국내침해: 10년 이하)
- 실무적으로 중첩되는 영역이 넓어 산업기술침해와 영업비밀침해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음 → 하나의 양형인자표를 통해 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1안은 결과적으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2안과 차이가 있는데, 향후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 수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대유형을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음

○ 신규 설정하는 범죄를 포함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은 산업기술 가운데 특별히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기술의 국외 유출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산업기술침해와 행위태양, 보호범익이 유사함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1, 2, 4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과 구조가 유사함

○ 대유형3의 명칭을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로 변경

- 영업비밀침해 범행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침해행위도 포함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유형3의 명칭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

○ 소유형의 분류

- 1유형: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상 직무상 비밀누설·도용은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경미하여 따로 유형 분류
- 2유형, 3유형: 영업비밀, 산업기술, 방산기술, 전략기술 사이에서도 국내침해와 국외침해 사이에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음 → 국내침해보다 국외침해를 더 중하게 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사 반영
- 4유형: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의 국외침해는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중하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함

■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 과 '5년 이상의 징역' 이 함께 묶여 있으나, 폭력범죄에서 위와 같은 법정형을 같은 유형으로 묶은 사례(1-3 유형의 상해치사 '3년 이상의 징역', 존속상해치사 '5년 이상의 징역' 이고, '존속인 피해자' 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가 있는 점, 통계 사례가 없어 규범적 설정이 필요한 영역인 점에 비추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전략기술(또는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더 높으나 이는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양형인자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

(4) 부정경쟁행위(대유형4 또는 5) ⇨ 견해 일치(현행 유지)

(가) 현행 양형기준

04¹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나) 통계

유형		형량(월)									
		2	3	4	5	6	7	8	10	12	
부정경쟁행위	수	1	0	0	0	7	0	1	1	2	
	비율	8.3	0.0	0.0	0.0	58.3	0.0	8.3	8.3	16.7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14	15	16	18	20	24	36			
부정경쟁행위	수	0	0	0	0	0	0	0	12	7.17	
	비율	0.0	0.0	0.0	0.0	0.0	0.0	0.0	100.0		

(다) 법정형 및 형량분포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카목 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조를 위반하여 파리협약 당사국 등의 휘장·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라) 검토: 현행 유지

- 부정경쟁행위는 행위태양이 다른 유형들과는 다소 달라 특유의 양형 인자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정형 동일
- 별도로 유형 분류를 달리할 특별한 필요성 없음

(5)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 여부 ⇨ 견해 일치(소극)

-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음
 -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예: 횡령·배임범죄, 사기범

죄) 엄격하고 세밀한 피해액 심리가 필요한데, 피해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손해액 심리가 필수적인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민사) 사건에서도, 손해액을 정밀하게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한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특허법 제128조 제7항 등)을 두고 있고, 상당수의 사안에서 위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 피해의 경중을 구분할 기준도 불명확하여 유형 분류 어려움
- 지식재산 사건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도 사건의 심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액에 관한 심리부담이 가중될 경우 심리가 더 오래 걸려 오히려 피해구제에 역행할 우려도 있음
- 현행 양형기준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를 두어 피해가 특별히 중한 경우에는 피해정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있음 → 양형기준의 세분화 보다는 피해자 진술권의 확대나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등 피해 입증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4. 전문위원단 다수의견 요약

01¹ 등록권리침해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침해행위			

02¹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침해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03¹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2	국외침해			

04¹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설·도용			
2	국내침해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05¹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정의]

01¹ 등록권리침해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상표법 제230조

02¹ 저작권침해행위

가.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권리 제외) 등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1.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2. 부정등록행위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제93조) 침해행위 3의2. 복제·전송자의 정보 청구 목적 외 용도 사용 행위 3의3. 업 또는 영리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3의4. 업 또는 영리목적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등 3의5. 암호화된 방송 신호 복호화 목적 장치 제조 행위 등 3의6. 불법복제물에 부착하기 위한 라벨 위조 행위 등 3의7. 방송전 신호 송신행위 4.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03¹ 영업비밀침해행위

가. 제1유형(영업비밀 국내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나. 제2유형(영업비밀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04¹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가. 제1유형(산업기술 등 누설·도용)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4항

나. 제2유형(산업기술 등 국내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2항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3항

다. 제3유형(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1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략기술 수출 등/전략기술 외국 사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등/전략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공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2항

라. 제4유형(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 유출 등/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전략기술 취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05¹ 부정경쟁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카목 1)부터 3)까지, 타목 및 과목은 제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파리협약 당사국 등의 휘장·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2호

Ⅲ. 향후 일정

- 일시: 2023. 9. 4.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